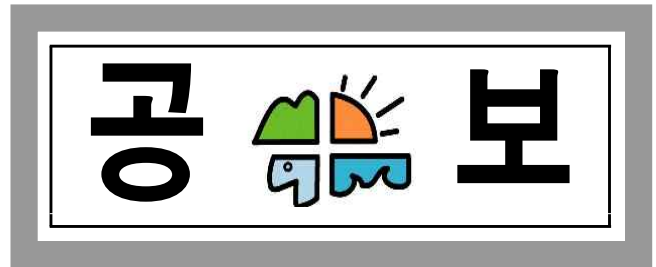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05호 2012년 6월 8일(금)

조 례

-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..... 2
-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..... 6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

2012년 6월 8일

속초시조례 제2295호

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

속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속초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, 노사협력증진, 그 밖의 경제활성화 를 위하여 속초시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 근로자·사용자·시민 및 속초시(이하 “노사민정”이라 한다)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

1.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2.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3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
4. 시 노사·고용관련 업무 담당 과장
5. 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6.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
7.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망·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
2.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하는 때
3.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4.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

제8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간사 및 서기)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,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.

제10조(사무국)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·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
2.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
3. 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노사업무 실무 책임자
4.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

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.

제12조(의견청취 등)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
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성실히행의무) ① 관계 행정기관,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 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협의회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, 관련기관·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

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제14조(수당 등)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속초시노사정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본다.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

2012년 6월 8일

속초시조례 제2296호

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중 “다음 각호의 1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항 제7호 및 같은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

7. 사치·향락·사행성 등 소비성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조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체

② 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업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3월 이내에”를 “3개월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실

태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휴업·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.

“별표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(제3조 관련)

구 분	내 용
지원대상기업	- 우선 지원대상(제조업중) - 수출상품 생산업체 -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- 농공단지 입주업체 -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큰 업체 - 특별 지원대상 - 설악산국립공원지역(설악동)내 중소기업 - 기타 지원대상 - 지역경제와 밀접한 중소기업 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용 도	시설 및 운전자금
용 자 한 도	- 우선 지원대상(제조업) : 3억원 이내 -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, 3천만원 이하의 신청건은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추천 가능 (결산재무제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참조) -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이 8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% 이내 추가 가능 - 특별 지원대상 : 5억원 이내 (융자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, 도비 등 외부지원이 있는 경우, 10억원까지 용자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) - 기존 은행융자액 범위 안(금융기관 부채현황서 등 참조) - 신규 은행융자액 범위 안(금융기관 대출추천서 등 참조) - 기타 지원대상(비제조업) : 7천만원 이내 -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, 3천만원 이하의 신청건은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추천 가능 (결산재무제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참조) -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%이내 추가 가능
지 원 조 건	- 금리 : 은행 일반 대출 금리중 5% 이내를 이차보전 - 이차보전기간 : 융자일로부터 2년간 (단, 특별 지원대상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) ※ 기간연장 : 1년만 연장가능 (단, 특별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)